

##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및 휴대 물품 반입시 주의사항

-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물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여행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연락처(TEL) >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 63-2-856-9210
- 필리핀 관세청 : 63-2-527-4537/ Fax. 63-2-527-4573
  - 홈페이지 : [www.customs.gov.ph](http://www.customs.gov.ph)
  - 이 메 일 : [commissionerbec@gmail.com](mailto:commissionerbec@gmail.com)
  - custom help desk : 63-2-917-3201~5
- 마닐라 국제공항(NAIA 1) 세관 : 63-2-879-6003
- 마닐라 국제공항(NAIA 1) 세관 : 63-2-831-6262  
(여행객 서비스부)
- 마닐라 국제공항(NAIA 1) 세관 : 63-2-879-5185/ 877-1109 loc.3930  
(입국세관 심사과)
- 세부 국제공항 세관 : 63-32-340-2486 (arrival)
- 클락 국제공항 세관 : 63-45-599-2888 loc. 650

##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2014년 11월 현재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주류	○ 2병(1리터 이하)	
담배	○ 궐련 400개비(20Pack) 또는 연초 2통	
향수	○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의 향수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b>재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 시 관세부과 원칙</b>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재출국할 때 반출시 관세면제 가능	
외국환신고	○ 필리핀 페소(Peso)화: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벌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가능 ○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의약품	○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동·식물류	○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 계란, 조류, 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 ○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반입불허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li> <li>○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li> <li>○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li> <li>○ 도박용품, 중고 의류, 냅마, 상아 제품</li> <li>○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li> <li>○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li> </ul>																	
반입제한 물품 및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table border="1" data-bbox="483 920 1184 1290" style="margin-left: 20px;"> <tr> <td>살아있는 동물, 육류</td> <td>축산청(BAI)</td> </tr> <tr> <td>과일, 채소 기타 작물</td> <td>작물생산청(BPI)</td> </tr> <tr> <td>수산물</td> <td>해양수산청(BFAR)</td> </tr> <tr> <td>총기, 부품, 폭발물</td> <td>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td> </tr> <tr> <td>Tape, CD, DVD류</td> <td>광학매체위원회(OMB)</td> </tr> <tr> <td>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td> <td>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td> </tr> <tr> <td>희귀 생물</td> <td>환경자원부(DENR)</td> </tr> <tr> <td>의약품 기타류</td> <td>식품의약품청(BFAD)</td> </tr> </table> </li> <li>○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li> <li>○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서에 물품양과 총액수를 적어 신고하여야 함.</li> </ul>	살아있는 동물, 육류	축산청(BAI)	과일, 채소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총기, 부품, 폭발물	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	Tape, CD, DVD류	광학매체위원회(OMB)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희귀 생물	환경자원부(DENR)	의약품 기타류	식품의약품청(BFAD)	
살아있는 동물, 육류	축산청(BAI)																	
과일, 채소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총기, 부품, 폭발물	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																	
Tape, CD, DVD류	광학매체위원회(OMB)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희귀 생물	환경자원부(DENR)																	
의약품 기타류	식품의약품청(BFAD)																	

## 한국인 여행객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질의를 받을 수 있으며,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 시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도한 물품 반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부 필리핀 공항 세관직원들은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의 행태를 알고 한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유념하여 고가의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 가방)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반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 귀국 시 재반출 할 수 있으나, 일선 공항 세관원들은 실제로는 재반출약속신고서 접수를 거부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 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재반출 할 수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2301)
- 필리핀 공항(NAIA 1,2,3 터미널)내 물품 보관창구는 별도로 없으며, 입국시 반입물품에 대한 “재반출약속신고서”를 작성 하신 후 물품에 따른 세금 납부 후 납부증명서(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 부과된 물품을 갖고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출국시 세금 부과된 “물품과 납부증명서”를 제시한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필리핀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물품의 재반출을 하지 않으므로 세금 납부한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 세부 등 주재국 지방공항은 반입물품 보관 장소가 없어 보관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에게 적발되면 반출·입된 돈은 압수되고 현장 체포 등 형사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체포되어 구금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